대구생활문화센터 대관 이용수칙

이용자는 대구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아래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, 이행하지 않을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[대관 일반]

- 1. 사용자는 대관시간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. ※대관시간은 준비 및 철수시간을 포함합니다.
- 2. 출·퇴실시 대관 대장을 작성합니다.
- 3.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않습니다.
- 4. 대관 신청·취소·정지 및 관련 세부절차는 (재)대구문화재단과 대구생활문화 센터가 정한 바를 준수합니다.
- 5. 대관 신청 및 대관료 납입 주체는 성인이어야 합니다.
- 6. 시설물 외의 추가 장비 설치 등은 반드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- 7. 사용자는 사용완료 즉시 모든 부속설비(조명 및 음향 컨트롤, 테이블, 의자 등)를 원상복구 시키고 반입·설치한 설비를 철거해야 합니다.
- 8. 사용자는 사용완료와 함께 냉 · 난방기, 전선 등의 안전점검을 해야합니다.
- 9. 대관공간 외의 공간에서 부속설비 및 집기 등을 임의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.
- 10. 대관 공간 내 취사행위 및 음식물 반입은 불가합니다.
- 11.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는 사용자가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.
- 12. 다른 대관자 등의 활동에 방해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
- 13. <u>시설 내 사물함은 사용자의 물품을 임시보관하기 위한 것이며, 사물함 또는</u> 대관공간, 시설 내에 방치된 사용자의 물품, 집기 등은 사용일로부터 1주일 후 자동폐기됩니다.

[시설 안전 유지 관련]

- 1. 대구생활문화센터 건물 전체는 금연구역입니다. ※흡연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.
- 2. 건물 내 화기성 물질, 전열기 등 시설 손상 우려 물품은 절대 반입금지입니다.

- 3. <u>사용기간(준비 및 철거시간 포함) 중 기존 시설물에 손상을 입힌 경우 사용자</u> 는 변상의 책임을 지며, 사전승인 없이 철수가 지연되는 경우 원상복구 및 철 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. 이때 발생한 설비의 손상에 대하여 (재)대구문화재단과 대구생활문화센터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- 4. 사용기간(준비 및 철거시간 포함) 중 발생한 당사자 및 관계자, 관객의 모든 인적, 물적 손해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.

상기 사항의 미준수 시 대관승인이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으며, 해당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향후 대관 신청시 사전제한될 수 있습니다.